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제2025-1371-SO-5857호

## 총회운영규약

General Assembly Operating Bylaws | 수정본 v2.0

문서명	총회운영규약 (수정본 v2.0)
근거정관	제33조 제2호, 제39조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28조의2
의결주체	총회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제정일	2026년 월 일 (창립총회 의결)
시행일	2026년 월 일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

## 목 차

**제 1 장 총칙** ... 제1조~제4조

**제 2 장 총회의 소집** ... 제5조~제10조

**제 3 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 제11조~제14조

**제 4 장 의결권 및 대리인** ... 제15조~제16조

**제 5 장 의사 진행** ... 제17조~제20조

**제 6 장 의결 사항 및 정족수** ... 제21조~제24조

**제 7 장 회기의 연장 및 속행** ... 제25조

**제 8 장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 제26조~제27조

**제 9 장 외부인사의 참석** ... 제28조

**제 10 장 보칙** ... 제29조~제30조

**부 칙** ... 제1조~제3조

- 별지 제1호 의결권 행사 위임장
- 별지 제2호 총회 의사록 표준 양식
- 별지 제3호 전자총회 참여 동의서 (사인오케이용)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위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총회의 소집·운영·의결·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총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라 함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관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확정된 조합원 자격 유지자를 말한다.
3. "의안"이라 함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안건을 말한다.
4.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화상회의 시스템, 전자투표 플랫폼,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현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제 4 조 (총회의 구성 및 성격)

- ①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 규약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 제 2 장 총회의 소집

### 제 5 조 (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 2. 감사보고서의 승인
  - 3.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해당 연도에 선출·해임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정기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 6 조 (재적조합원의 확정)

v2 수정사항: ① 확정 기준일 "7일 전" → "10일 전"으로 변경 (소집통지 기한 7일과 구분) ② 선거인명부 비치 표현 "총회 개최일부터 총회 당일까지" → "작성일부터 총회 당일까지"로 수정

- ① 총회를 구성하는 재적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이 승인되고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 ② 재적조합원으로 확정된 조합원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총회 당일까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1항의 재적조합원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회가 탈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제외한다.

### 제 7 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내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 8 조 (소집 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각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총회의 목적 사항(의안)
  2.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경우 접속 방법 포함)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 가능 여부 및 참여 방법
  4. 위임장 제출 방법 및 기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5.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소집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조합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제 9 조 (소집 공고)

- ① 이사장은 제8조의 소집 통지와 함께 정관 제6조의 공고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seniorsinmun.com)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목적 사항(의안) 및 안건별 제안 이유
  2.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참여 가능 여부 및 접속 방법
  4. 위임장 양식 및 제출 기한
- ② 정관 변경, 임원 해임, 제명, 합병·분할·해산 등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안은 홈페이지 공고와 함께 조합원 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고는 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총회 종료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조합원 제안권)

- ① 조합원이 재적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 3 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근거 조문: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참여, 2020.12.29. 신설 / 2021.6.30. 시행)

### 제 11 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 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이하 "전자총회"라 한다)으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자총회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완전 전자총회: 모든 참여자가 전자적 방법으로만 참여하는 방식
  2. 혼합 방식 총회: 일부 조합원은 현장에 출석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식

### 제 12 조 (전자총회의 소집 통지)

- ① 이사장은 전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제8조의 일반 통지 사항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전자총회 방식 및 접속 플랫폼 명칭
  2. 화상회의 접속 링크(URL), 회의 ID 및 비밀번호

- 3. 전자적 사전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사전 투표 기간 및 방법
  - 4. 기술적 지원 창구(담당자 연락처) 및 접속 장애 발생 시 대처 방법
- ② 전자총회 소집 통지는 제8조 제1항의 기한(개최 7일 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속 방법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14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제 13 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 ①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해당 조합원은 재적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된다.
-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실시간 전자 투표: 화상회의 시스템 내 투표 기능 또는 연동된 전자투표 플랫폼을 통해 회의 진행 중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방식
  - 2. 사전 전자 투표: 총회 개최 전 이사회가 지정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 사전 투표 기간은 총회 소집 통지일부터 총회 개최 전날까지로 한다.

v2 수정사항: 사전 전자투표 기간 "총회 개최 3일 전부터 전날까지(2일)" → "총회 소집 통지일 부터 총회 개최 전날까지(최대 6일)"로 변경. 전국 분산 시니어 조합원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감안한 조치.

- ③ 사전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투표 참여자는 해당 의안에 대해 총회 당일 추가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 투표 결과는 총회 진행 중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총회의 현장 또는 실시간 전자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발표한다.
- ④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본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여 실시한다.
  - 1. 화상회의 접속 시 성명 및 조합원 번호 표시
  - 2. 조합이 사전에 발급한 개인 식별 코드(PIN) 입력
  - 3.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타 본인 확인 수단
- ⑤ 이사장은 전자총회 진행 시 전자적 방법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 의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전자총회의 운영 원칙)

- ① 이사장은 전자총회를 진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전 전자적 참여자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화면·음성 공유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다.

2. 표결 전에 전자적 참여자가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채팅 기능, 손들기 기능 등)을 안내한다.
  3. 표결 시에는 현장 출석자와 전자적 참여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 ② 전자총회 중 접속 장애, 통신 두절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조합원이 장애 발생 사실을 총회 종료 전까지 조합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 경우: 이사회가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며,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장애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본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해당 조합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③ 전자총회의 회의 내용은 이사장이 승인한 방법으로 녹화·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존한다.

## 제 4 장 의결권 및 대리인

### 제 15 조 (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총회일 현재 정관이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 효력이 발생한 자 또는 총회에서 이미 제명이 승인된 자
-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 조합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 16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다만, 정관 제37조 단서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인 한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총회 개회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임장의 제출은 서면 제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팩스 등)로 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총회 개최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⑤ 위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임자(조합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조합원 번호) 및 연락처
  - 2. 수임자(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조합원과의 관계
  - 3. 수임자가 정관 제37조의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체크란
  - 4. 위임의 범위 (특정 의안 한정 위임 또는 포괄 위임)
  - 5. 위임일자 및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⑥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2 수정사항: 정관 제37조 단서(전자적 방법 시 1인 한도 예외) 신설에 맞추어 제2항에 단서 조항을 반영. 본 조는 정관 개정 인가 후 정관 제37조 개정 내용과 함께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의 사 진 행

### 제 17 조 (총회의 개회 및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조합원과 대리인에 의해 출석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 ② 총회의 개회 시각이 되어도 출석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장은 30분의 범위 내에서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연기 후에도 출석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장은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하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 진행을 주재한다.
- ② 의장은 조합원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제15조 제3항) 해당 안건 의결 시에는 출석한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임시 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의 표결을 진행한다.

-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정관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안건의 심의 및 발언)**

- ① 의장은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합원은 의안 심의 중 발언을 원하는 경우 의장에게 발언 허가를 구하여야 하며,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전자적 방법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은 화상회의 플랫폼의 채팅 기능, 손들기 기능 등을 통하여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v2 수정사항: 기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재적조합원 전원 동의"로 강화. 소집 통지 없는 안건 상정은 전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 긴급 사안은 임시총회 소집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제 20 조 (표결 방법)**

- ① 총회의 표결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의장이 총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거수표결: 의장의 선포에 따라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거수하여 표결하는 방법
  2. 기립표결: 의장의 선포에 따라 찬성, 반대 순으로 기립하여 표결하는 방법
  3. 무기명 투표: 기표 용지에 기표하여 비밀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임원 선출,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자 투표: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 ② 재적조합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③ 전자총회에서의 표결은 화상회의 플랫폼의 투표 기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 6 장 의결 사항 및 정족수**

## 제 21 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22 조 (일반의결 정족수)

- ① 제21조의 사항 중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 제 23 조 (특별의결 정족수)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 24 조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소집)

- ① 총회가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불성립된 경우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재소집 총회는 최초 총회와 동일한 의안을 다루며, 재소집 이유 및 최초 총회 불성립 사실을 소집 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기의 연장 및 속행

### 제 25 조 (회기의 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가 연장된 경우, 속행된 총회는 제8조 제1항의 소집 통지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전자총회의 경우 회기 연장은 기술적 장애 복구에 필요한 시간 또는 30분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그 이상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해당 안건을 차기 총회로 이월할 수 있다.

## 제 8 장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 제 26 조 (의사록의 작성)

- ① 총회가 종료된 후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전자총회의 경우 개최 플랫폼 및 접속 정보)
  - 2. 총회 개최 방식 (현장 집합 총회, 전자총회, 혼합 방식 등)
  - 3. 재적조합원 수, 출석조합원 수 (현장 출석·전자 출석·대리 출석 구분)
  - 4. 의장(이사장)의 성명
  - 5. 의사의 경과, 심의 내용 및 그 결과 (찬성·반대·기권 표수 포함)
  - 6. 조합원의 발언 요지
  - 7. 전자총회의 경우 기술적 장애 발생 여부 및 조치 사항
  - 8. 기타 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항
-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총회의 경우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전자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사록에 회의 녹화본 또는 녹취록을 첨부하거나 해당 파일의 보관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 27 조 (의사록의 보존 및 열람)

- ① 의사록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조합원 및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의사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사본 교부에 필요한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③ 의사록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9 장 외부인사의 참석

### 제 28 조 (회의 참여 및 외부인사 참석)

- ① 사외이사 및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④ 외부인사의 참석은 이사장이 허가하며,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 10 장 보 칙

v2 수정사항: 목차 제9장 표기 오류 정정. 제9장(외부인사 참석)과 제10장(보칙)이 분리되어 총 10개 장으로 구성됨.

### 제 29 조 (규약의 제정 및 개폐)

본 규약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정관 제33조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 제 30 조 (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정관, 운영규약 및 이사회의 의결 또는 지침의 순

서에 따른다.

---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이미 소집 공고된 총회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제 3 조 (전자총회 시행 시기)

제3장(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제11조~제14조)의 규정은 정관 제28조의2가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된 날 이후, 이사회가 전자총회 운영 지침을 마련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총회 운영 지침은 정관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다.

v2 수정사항: 기존 "이사회가 전자총회 운영 지침을 마련한 날부터 시행" → "정관 제28조의2 주무관청 인가 후 + 이사회 지침 마련" 이중 조건으로 강화. 정관 개정 인가 전에 전자총회 조항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지.

---

2026년 월 일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총회  
의장(이사장) 장 한 형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의결권 행사 위임장

의 결 권 행 사 위 임 장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위임)

v2 수정사항: 정관 제37조 대리인 자격 확인란 신설 — 수임자가 "다른 조합원" 또는 "동거 가족"임을 확인하는 체크란을 추가하여 자격 미달 대리인을 사전 차단.

【 위임자 정보 】

성 명		조합원 번호	
생년월일	19 . . . .	연락처	

【 수임자(대리인) 정보 】

성 명		조합원 번호 또는 생년 월일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 자격 확인 (정관 제37조) —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 수임자는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다른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번호:            )
- 수임자는 위임자와 동거하는 가족입니다. (관계:                    )
- ※ 위 두 가지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위임의 범위 】

위임 범위	<input type="checkbox"/> 포괄 위임 (모든 의안에 대하여 위임) <input type="checkbox"/> 특정 의안 한정 위임: 의안 번호 _____ (의안명: _____)
-------	---

위 본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총회운영규약」 제16조에 따라,

20\_\_년 \_\_월 \_\_일 개최되는 제\_\_회 \_\_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위 수임자에게 위  
임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위임자(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귀중**

※ 제출처: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총회 개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  
우는 예외)

※ 수임자 자격 확인란(위 체크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총회 의사록 표준 양식

제 회 \_총회 의사록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총회 종류	<input type="checkbox"/> 정기총회 <input type="checkbox"/> 임시총회	총회 회차	제 회
개회 일시	2026년 월 일 (요일) 시 분	폐회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
개최 방식	<input type="checkbox"/> 현장 집합 <input type="checkbox"/> 전자총회(화상회의) <input type="checkbox"/> 혼합 방식		
개최 장소 또는 플랫폼			

【 출석 현황 】

재적조합원	명	출석조합원 합계	명
현장 출석	명	전자 출석	명
대리 출석	명	개회 정족수 충족	<input type="checkbox"/> 충족 (과반수 이상 출석)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임원 출석 현황 】

직 위	성 명	출석 여부	비 고
이 사 장	장 한 형	<input type="checkbox"/> 출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의장
이 사	송 영 운	<input type="checkbox"/> 출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이 사	박 창 용	<input type="checkbox"/> 출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감 사	심 일 보	<input type="checkbox"/> 출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 의사 진행 경과 】

의장이 위와 같이 재적조합원 명 중 명이 출석(전자 출석 명, 대리 출석

명 포함)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 전차(前次) 의사록 낭독: 의장이 전차 의사록을 낭독하고 조합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 조합원 전원 동의로 전차 의사록 원안 승인

**【 상정 의안 처리 결과 】**

**제 1 호 의안:**

의안명		제안자	
의안 내용 요약			
토의경과			
표결 결과	찬성 표 / 반대 표 / 기권 표	<input type="checkbox"/> 원안 가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제 2 호 의안:**

의안명		제안자	
의안 내용 요약			
토의경과			
표결 결과	찬성 표 / 반대 표 / 기권 표	<input type="checkbox"/> 원안 가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제 3 호 의안:**

의안명		제안자	
의안 내용 요약			
토의경과			
표결 결과	찬성 표 / 반대 표 / 기권 표	<input type="checkbox"/> 원안 가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제 4 호 의안:**

의안명		제안자	
의안 내용 요약			
토의경과			

<b>표결 결과</b>	찬성 표 / 반대 표 / 기권 표	<input type="checkbox"/> 원안 가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	--------------------	--------------------------------	-----------------------------

**【 기타 사항 】**

의장이 모든 의안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포하다.

위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아래 서명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2026년 월 일**

**의장 (이사장) :**

**(서명 또는 날인)**

<b>서명인 1</b>	성명: (서명 또는 날인)
<b>서명인 2</b>	성명: (서명 또는 날인)
<b>서명인 3</b>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총회운영규약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총회 참여 동의서

전자총회 참여 동의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총회 개최에 대한 동의 — 사인오케이(SignOK) 전자서명용)

이 동의서는 현 정관에 전자총회 근거 조항이 신설되기 전, 온라인 화상회의(줌) 방식의 총회 개최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서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 조합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 총회 안내 】

총회 종류	제 회 _총회 ( <input type="checkbox"/> 정기총회 <input type="checkbox"/> 임시총회)
개최 일시	2026년 월 일 ( 요일) 시 분
개최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Zoom 또는 이사회 지정 플랫폼)
접속 링크 (URL)	추후 소집 통지시 별도 안내
주요 안건	① 정관 변경의 건 ② 임원보수 세칙 승인의 건 ③ 기타 안건

【 동의 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 1. 위 총회가 온라인 화상회의(Zoom 등) 방식으로 개최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2. 화상회의를 통한 참석이 정관 제34조의 "출석"으로 인정됨에 동의합니다.
- 3. 위 총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을 조합 홈페이지 또는 소집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4. 위 총회 결의에 대하여 온라인 화상회의의 개최 방식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인 정보 (사인오케이 서명 완료 시 자동 기재) 】

성명		조합원 번호	
생년월일	19 . . . .	조합원 유형	

<b>연락처 (휴대폰)</b>		<b>이메일</b>	
------------------	--	------------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모든 동의 사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명일 :    년    월    일**

<b>전자서명 (사인오케이)</b>	성명:	전자서명:
---------------------	-----	-------

###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신문네트워크 이사장 귀중

【 사인오케이(SignOK) 활용 안내 】 이 동의서는 사인오케이(<https://signok.com>)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해 발송됩니다. 링크 접속 후 동의 사항 체크 및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조합 사무국 ([seniorsinmun.com](http://seniorsinmun.com))